

“노사협력 밀알되어 극복되는 경제위기”

국무조정실

우110-760 /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008호 / 전화 734-8791 (행) 2188 / 전송 733-6634

규제개혁 3심의관실 심의관 구본영 과장 류충렬 사무관 김종문

문서 번호 국무규제 05090 -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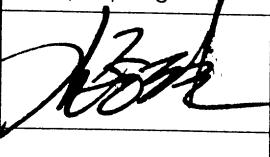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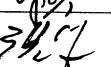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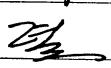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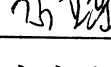
시행일자 '99. 10. 6.

정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보존기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개	
조정관		
심의관		
과장		기획심의관 : 
기안자	김종문	협조
심사자		심사일 '99. 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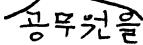
제 목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법령개정 및 집행등 철저한 후속조치 지시
(국무총리지시 1999 - 5 호)

-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등에 의거 제3차 규제개혁 이행실태점검(99.9.13-21)을 실시한바, 폐지된 규제 또는 법령미근거 규제를 계속 집행·운용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없이 규제를 신설하는등 1·2차 점검시 지적된 부진사례가 상당수 재차 지적되는등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금번 현장점검결과를 불임과 같이 통보하면서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정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아래 -

각급 행정기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후속조치추진 지시

-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집행기관에 이를 신속히 통보하여 사후조치 및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관 규제개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례등 관련규정개정과 그 집행실태를 지도·점검하기 바람 (별첨 건교부사례 참조)
- 행정자치부 장관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등의 정비지연과 폐지·개선된 규제를 종전대로 계속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교육, 지도하기 바람


국무규제 05090 - 106

□ 금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금번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기관장 책임하에 시정조치 하고,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례에 대해 즉시 시정 토록 조치하고, 폐지·개선된 규제의 종전규제 집행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위 지시사항에 의한 조치결과(또는 처리계획)를 99.10.30까지 보고하기 바라며, 금번 지시 이후에도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자 및 상급자까지 철저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주지시키기 바람

붙임 :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결과(3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13-21, 31-47, 52-55, 57-67)

規制改革 履行實態 點檢結果(3次)

'99. 9.

規制改革委員會
(國務調整室)

- 목 차 -

I. 點檢概要	1
II. 點檢結果 總評	2
III. 分野別 點檢結果	5
< 중앙행정기관 >	5
◦ 기관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 신설강화규제 심사 미흡	
◦ 법령미근거 규제 운영	
< 지방자치단체 >	6
◦ 기관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 폐지된 규제의 계속 운영	
◦ 법령미근거 규제 운영	
< 주요 수법사례 및 건의사항 >	10
IV. 措置計劃	11

I. 點檢概要

□ 點檢 目的

-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99.4부터 '상시점검체제'를 구성·운영중
 -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개혁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3차점검을 실시

※ 1차점검 (99.4.19~24) 및 2차점검(99.7.5~13)

- 7개 중앙행정기관, 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59건의 부적합 사례적발, 시정조치 완료
- 관계자문책
 - : 중앙부처 소관 6건 조치완료(징계3, 주의3), 기관경고 2건완료 (경기도 의정부시, 전남 순천시), 기타 지자체소관 35건 조치완료 (훈계9, 주의26)

□ 點檢期間 · 對象

- 점검기간 : 99.9.13~21 (9일간)
- 대상기관 : 중앙 5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일선 소방본부 및 소방서 4개(21개 기관)
 -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산광역시(연제구, 중구, 기장군, 동래소방서), 충청북도(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충주소방서),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소방본부), 경상남도(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소방서)

□ 重點 點檢項目

< 중앙행정기관 >

- ▶ 규제심사 없는 규제신설 · 강화 여부
- ▶ 규제등록 및 관리현황
-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 ▶ 폐지 · 개선된 규제의 실제 운영여부
- ▶ 하위법령정비 등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
- ▶ 법령미근거 규제의 운영여부 등

II. 點檢結果 總評

- 그간 2차례에 걸친 이행실태점검과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감사 등 숱한 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 3차점검에서 또 다시 이전과 동일한 유형의 부적합 사례가 지적되는 등 현장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및 일선공무원의 규제집행행태에 큰 변화가 없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서면심사 위주의 위원회 운영과 고시 · 예규등 자체법규의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부적정 등 형식적 규제심사를 하는 사례가 여전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 규칙의 개정등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와 법령개정사실을 숙지하지 못하여 폐지된 규제나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재차 지적됨

-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은 물론 관계자 문책 및 교육등을 통해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공무원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 및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지적사례를 각급 행정기관에 전파하고, 이후 동일유형의 지적사례가 재발할 시 엄중히 책임을 추궁

< 點檢結果 概要 >

□ 總括表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계
건수	10	100	110

* 1차 68건, 2차 91건

□ 中央行政機關

- 유형별 지적사항 : 10건

유형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형식적 운영	규제심사 없이 규제 신설·강화	규제동록 누락, 부적정 등	기타
건수	1	3	4	2

- 기관별 지적사항 : 10건

기 관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건 수	1	2	1	2	3

※ 문광부 별도지적 1건

□ 地方自治團體 등

- 유형별 지적사항 : 100건

유형	폐지된 규제 계속 운영	법령미근거규제 운 용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초례정비등 후속조치 지역	기타
건수	38	24	28	9	1

- 기관별 지적사항 : 100건

- 광역자치단체(11)

기 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건 수	4	2	3	2

- 기초자치단체(89)

기관	부산연제구	부산중구	부산기장군	충북충주시	충북영동군	충북옥천군
건 수	5	7	7	11	5	8
기관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군산시	경남창원시	경남김해시	경남양산시
건 수	9	5	8	6	9	7

* 충북충주소방서 2건 지적

III. 分野別 點檢結果

<中央行政機關>

1. 규제심사 없는 신설·강화규제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신설·강화규제는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기관에서는 법정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됨

【 주요지적사례 】

- ◆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식약청고시99-26호)’를 개정함에 있어 제6조(인정사항의 변경 승인), 제7조(인정취소) 등의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신설규제에 해당됨에도 규제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사항을 종결하고 동규제를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청)
- ◆ 산림법상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방부처리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강화규제를 규개위 심의없이 결정 하여 고시(산림청)

2. 규제정비계획 임의수정 및 규제등록 부적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규제폐지, 완화후 30일 이내에 규제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규제등록을 지연시키거나, 규제사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누락시키는 사례
-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을 임의로 수정하는 사례

【 주요지적사례 】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응시연령) 및 제11조의3(응시자격) 등을 규제사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교육부)
- ◆ 98년 관세청 규제정비계획중 폐지키로 한 132건중 10건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규개위 재심요구등)을 위반하여 폐지를 개선으로 수정·변경하고 이를 폐지한냥 규제등록(관세청)

3.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형식적 운영

-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국무총리지시가 있었음에도 서면심사등 형식적 운영

※ 99.5.7 국무총리지시99-10호

【 주요지적사례 】

- ◆ 98.7.25 이후 99.9.7까지 16회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모두 fax등을 통한 서면심사로 운영하였고, 특히 총리지시(99.5.7)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서면심사로 위원회 운영(노동부)

< 地方自治團體 >

1. 규제개혁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 1, 2차 점검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의 효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기반은 구축되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 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다만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타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홍보 요구,

【 주요지적사례 】

- ◆ 규제개혁위원은 민간인을 50%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규제개혁위원 16명중 10명은 본청 간부직공무원으로, 도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은 6명으로 구성(충북도)
- ◆ 99.5.10 뒤늦게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구성한 이후 99.9 현재까지 단1회 개최(부산 기장군)

2.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종전대로 운영

- 1,2차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파가 잘 이루어져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폐지·개선된 규제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지 및 교육부족 등으로 종전 규제를 계속 운영하는 사례 다수 지적

【 주요지적사례 】

- ◆ 수산업법 제12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동일어선의 동시어업을 금지하는 규제가 99.3.17 폐지되었음에도 업무미숙지로 동규제를 적용하여 99.8.23까지 32건의 어업허가(부산시)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자 변경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제도로 대체되어 즉결민원으로 처리 토록 하였으나 즉결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고수리 통보후 등록증 수령토록 함(부산중구, 기장군)
-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업자의 어업생산실적 보고의무가 99.3.3 폐지되었으나 폐지이후 99.9. 현재까지 총364명으로부터 실적을 보고 받음(충북옥천군)
- ◆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연기신청등과 관련 폐지된 규제인 사무실 및 창고면적, 전화기 보유대수 등을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는등 폐지규제 계속 운영(전북익산시)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낮아 개정법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 (공통)

3. 법령미근거 규제운영

- 법령미근거 규제를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자체적인 추가발굴 정비 및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 특히, 감사를 의식해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불필요한 서류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근거없이 징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지적됨

【 주요지적사례 】

- ◆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건축주 준수사항으로 건축물 및 주차장 관리명판을 설치토록 함(부산연제구)
- ◆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법정구비서류 이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징구(충북충주시)
- ◆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한 도로일시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허가후 이설시 피허가자의 비용전체부담,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청소원 상주, 출퇴근시간 공사중지, 공사현황게시문 설치'등 법령등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전북전주시)
- ◆ 산림형질변경 허가의 조건으로 법령등의 근거없이 허가지내 또는 경계지내 5미터 이내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이장 또는 분묘연고자의 동의를 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시는 허가를 취소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규정하여 운영(경남김해시)

4. 규제개혁 후속조치 지원 등

-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등 하위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야 하나
 - 조례준칙 시달지연, 지방의회 의사일정, 공통조례 제정 등을 이유로 정비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규제개혁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 주요지적사례 】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수렵강습시간이 98.5월과 99.5월 2회에 걸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관련자치 법규인 전라북도수렵강습회운영규칙 제5조를 개정치 않고 종전의 5시간을 그대로 존치(전라북도)
- ◆ 영동군택지개발선수금규정등 5개 조례,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해당규제가 폐지되었고, 99.5.4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동조례, 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지연(충북영동군)
- ◆ 정부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99.1.29)되어 폐지된 “판매인계약승계”에 관한 규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에 과거대로 존치하여 운영(경상남도)

5. 기타사항

- 한편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아니었으나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굴되었음
 - 법령에 근거 없는 지침 교육(문광부)

【 주요지적사례 】

-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등록업자가 당해 영업을 폐지할 때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9.5.27 문광부의 관련법령 지침교육시 폐업처리시에는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양식을 사용토록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서 양식을 만들고 노래 연습장, 게임방의 폐업시 폐업신고를 받아 민원처리(부산연제구) ⇒ 문광부 시정조치

<主要 垂範事例 및 建議事項>

1. 수범사례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주요 수범사례를 발췌·전파도록 함

【 주요사례 】

- ◆ 99.5월부터 규제법령 사전통보제를 실시하여 규개위 확정, 통보된 사항이나 관보에 게재된 법령 개정사항 또는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관련 법령 개정사항등을 전부서에 조기에 통보 사전에 숙지도록 노력하고 있음(부산광역시)
- ◆ 대기배출시설 및 특정시설설치 변경신고가 99.1.25폐지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변경신고한 민원인에게 환경수질과에서 폐지내용과 앞으로의 처리요령등을 공문으로 자세하게 설명·안내(충북옥천군)
- ◆ 규제개혁관련 공무원교육과정 운영(8개과정 1,000여명 : 99.3~) (전라북도)
- ◆ 98.12월 도와 시군의 규제사무를 전수조사하여 도내 시군에 전파, 홍보함은 물론 규제사무 등록 및 규제정비에 참고토록 함(경상남도)

2. 주요 건의사항

- 현지 공무원들의 건의사항 또는 제안이 다수 있었는 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향후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참고토록 할 것임

【 주요사례 】

-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구비서류를 징구하는 이유가 대부분 사후 상부기관 등의 감사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므로 규제집행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시 법정구비서류 외의 서류미징구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전라북도)

IV. 措置計劃

□ 當初된 規制 繼續運用 및 法令未根據 規制 中斷措置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용 중단토록 조치하고, 향후 폐지된 규제를 재차 운용할 경우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리도록 함
- 폐지·개선된 규제는 조례·규칙 개정전이라도 국무총리지시(국무총리지시 99-17호, 99.8.4)에 의거 즉시 폐지·개선하여 운영토록 재촉구
- 법령미근거 규제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즉시 운용 중단시키고, 부득이 계속 존치시킬 규제도 일단 운용중단후 규제영향 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근거 마련토록 조치
- 지적된 사례를 각 지자체에 통보, 유사사례를 자체정비토록 촉구

□ 機關別 規制改革 推進의 實質化 促求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특히 집행기관의 업무지침이 되는 고시·예규등 자체법규의 규제심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규제개혁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 및 규제업무가 실제로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사전달과 교육을 촉구

□ 主要 指摘事例에 대한 關聯者 問責

-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종전대로 계속 운영한 사례중 공직자의 잘못이 큰 사례는 관련자 징계 등 문책
-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

⇒ 금번 점검결과에 따른 조속한 시정·보완조치를 「국무총리지시」로 시달할 계획임